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12
----------	------

2020년 6월 17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4월 3일, 김경영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0년 6월 17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김경영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문화비축기지에 있는 시설은 기존 공원시설과는 차이가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 있으므로 이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금번 개정을 통해 문화비축기지 내 공원시설 이용료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의 대여료를 강의실 대여료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

하며,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하는 공연장과 옥상공간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함(안 [별표 2]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[수석전문위원 : 이 재 호]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공원인 문화비축기지의 일부 시설을 비롯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공원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는 공원관리청이 입장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각 시설의 요금과 징수 방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는 공원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, 서울시 공원 중에는 운동시설, 교양시설, 편익시설 등 공원시설에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(첨부 1 참고).
- 동 조례에는 상위법 근거에 따라 공원시설의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(제15조), 사용료(제16조), 점용료(제17조)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[별표]에 정하고 있음.

[별표 1] 공원입장료(제15조제1항 관련)
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[별표 3] 공원 및 녹지 점용료(제17조 관련)

2) 문화비축기지 공원시설 이용료 부과

- 2017년 개장한 문화비축기지는 기존 석유비축기지로 사용되던 탱크들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장, 강의실, 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을 만든 복합문화공원임.
 - 문화비축기지 공원시설 중에는 문화마당, 강의실, 공연장, 옥상공간 등 기존 공원시설과 형태를 달리하는 시설도 있으며, 각 공간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통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.
- 또한 문화비축기지에는 각 공간별로 조명, 전기, 음향시설 등 기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, 동 조례에는 장비사용에 대한 요금규정이 없어서 공간 이외에 시설 및 장비 대여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.
- 현재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문화비축기지의 장소사용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(2019. 1. 15 이후), 상위법령에서 공원시설 이용요금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과 장비사용에 대한 요금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.

3) 공원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통기준이 필요한 시설

-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비축기지 강의실, 공연장, 옥상공간의 공원시설 이용료 규정을 위한 개정안이나, 서울시 공원 전체에 적용하기

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.

- “강의실”은 공원별로 강의실, 회의실, 사무실 등 다양한 용어로 공원 시설을 정하고 있으며, 그 규모와 용도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강의실과 유사한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.
- “공연장”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 1]에 교양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「공연법」에서 정하는 시설임. 서울시 공원에는 작은규모 소공연장부터 627석 대규모(국립극장 하늘극장) 공연장이 있으며, 운영주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.
- 남산 도시자연공원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극장이 있으며, 시 직영 공원 중에는 문화비축기지에 T2공연장, 북서울꿈의숲에 꿈의숲아트센터가 있고,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관악아트홀, 명일근린공원에 강동아트센터 등이 있음.
-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은 「국유재산법」에 근거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,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은 자치구의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시직영관리공원의 공연장은 동 조례를 통해 운영하여야 하므로 공통된 기준 마련이 필요함. 특히 공연장 중에는 현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공연장이 있으므로 금번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 현재 운영계획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협약기간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.

구분	공원명 (관리방식)	시설명	이용요금 (100㎡,1시간)	관련 근거
시직영 관리 공원	문화비축기지 (시직영)	T2공연장	20,000원	·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(별표2 공원시설 이용료-강의실 대여료 적용)
	북서울꿈의숲 (관리위탁)	꿈의숲아트센터	55,000원	·수탁자 내부 방침 (객석 단가를 기준으로 대관료 산정)
자치구위임 공원	관악산 도시자연공원 (관리위탁)	관악아트홀	5,400 ~10,100원	·별도 조례 제정 운영중
	명일근린공원 (관리위탁)	강동아트센터 (대·소극장)	27,000~ 107,400원	·별도 조례 제정 운영중 ·클래식, 연극·무용, 뮤지컬 등 장르별로 산정
국가 시설	남산 도시자연공원	국립극장	86,000~ 380,000원	·국립중앙극장 대관규칙(문화체육관광부 령) 운영중 ·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적용

- “옥상공간”(면적 157㎡)은 문화비축기지에 있는 공간으로 전시, 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음. 그러나 옥상공간을 공원시설로 정의할 경우 일반 건물의 옥상도 이용료 부과를 해야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공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임.

4)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

- 동 조례 [별표2]에서 개정되는 시설은 강의실, 공연장, 옥상공간임.

① 강의실

- 서울시 공원의 강의실은 명칭이나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, “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을 포함”하는 내용과 “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”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.

② 옥상공간

- 문화비축기지의 옥상공간은 전시, 행사, 공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. 그러나 일반적인 옥상공간은 건물 옥상의 별도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, 옥상공간을 공원시설로 구분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.
- 따라서 별도의 옥상공간을 공원시설로 구분하기 보다는 공연장에 옥상공간을 포함하여 요금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.

③ 공연장

- 동 개정안에 “공연장” 기준을 신설하였으나,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이용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 - 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, 장비이용료를 별도로 하며, 야간은 30%를 가산하는 내용은 타 시설 요금과 비교해본 결과 적절한 조치임.
-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연장(복합문화공간)은 별도의 운영관련 규정(타법적용, 운영조례)을 가지고 있음. 따라서 동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을 달리 하여야 할 것임.
 - 다만 향후 신설되는 공연장 및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동 조례의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용료 부과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임.
- 동 조례에는 공원시설에 대한 요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, 구체적

인 내용은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으므로, 장비사용에 대해서는 각 공원의 시설별로 요금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, 서울시 자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

- 강의실은 유사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, 공연장은 기존 운영하던 곳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며, 옥상공간은 공연장에 포함하도록 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41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6월 17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공연장과 성격을 같이하는 '옥상공간'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연장 이용료 산정규정에 포함하며,
- 공연장 중 타 조례로 정하거나, 현재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와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본 조례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.

2. 주요 골자

- 안 별표 2 종별에 '옥상공간'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'공연장' 이용료 산정규정에 포함하도록 함.
- 안 별표 2 '공연장' 중 별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거나, 현재 사용수익허가된 경우, 그리고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본 조례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.
- 안 별표 '강의실'은 $1m^2$ 당 200~300원, '공연장'은 $1m^2$ 당 100~200원으로 사용기준 면적을 변경하도록 함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2 공통의 강의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
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-

안 별표 2 공통의 공연장(복합문화공간 포함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연장 (복합문 화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한다. 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-

안 별표 2 공통의 옥상공간란을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			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 공통 중				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 공통 중				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 공통 중			
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
강의실 대여료	100㎡당, 1시간당	20,000~ 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	강의실	100㎡당, 1시간당	20,000~ 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	강의실	100㎡당, 1시간당	20,000~ 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
<신 설>				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	100㎡당, 1시간당	10,000~ 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	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	100㎡당, 1시간당	10,000~ 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
				옥상공간	100㎡당, 1시간당	15,000~ 2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				
								<삭 제>			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공통의 “강의실 대여료”를 “강의실”로 하고, 강의실(중전의 강의실 대여료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
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-

별표 2 공통의 강의실(중전의 강의실 대여료)란 다음에 공연장(복합문화공간 포함)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 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	--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
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 공통 중	[별표 2] 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 공통 중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종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용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금액(원)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의실 대여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㎡당, 1시간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~ 30,000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신 설></p>	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강의실 대여료	100㎡당, 1시간당	20,000~ 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종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용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금액(원)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의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㎡당, 1시간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~300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㎡당, 1시간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~200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 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 기한까지 적용 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	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 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 기한까지 적용 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
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
강의실 대여료	100㎡당, 1시간당	20,000~ 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																		
종별	사용기준	금액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
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◦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◦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																		
공연장 (복합문화 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(8시간) 단위 계산 ◦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◦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◦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한다. ◦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 기한까지 적용 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																		